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92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1. 12.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0148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5. 3. 17.자 1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위 청구를 비롯하여 2015. 3. 16.자 46,400,100원의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청구로 93,379,175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2015. 3. 16.자

46,400,10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관해 원고는 위 2015. 3. 17.자 14,000,000원에 관해서만 항소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이를 철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철회된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3쪽 첫째 줄과 5쪽 5줄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중 5쪽 16, 17줄의 “원고도 (계좌번호 1 생략)는 C가 실제 사용하던 계좌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원고도 제1심에서 (계좌번호 1 생략)는 C가 실제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하였던 점(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위 계좌를 피고와 C가 같이 사용하던 계좌라고 주장을 바꾸면서 종래의 주장을 철회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계좌번호 1 생략)는 피고와 C가 같이 사용하던 계좌이고, (계좌번호 1 생략)에 2015. 3. 17. 입금된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돈은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9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다. 제1심에서 이 부분 판단에서 든 증거들(5쪽 6, 7줄)과 제1심법원이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2020. 2. 6.자 회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이 사건 돈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부터 여러 차례 피고 명의 계좌의 돈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을 정리하여 주장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2015. 3. 16.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돈이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오히려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이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이후의 사용내역에도 C의 직장과의 연관되어 보이는 사용처[예컨대 2015. 3. 17. L(E)으로 하여 지급된 700만 원 등]가 있거나 낮 시간대에 피고의 근무장소와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돈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돈이 입금된 이후 그 돈을 모두 피고가 사용하였다는 등의 주장, 증명도 없는 이상, 설령 이 사건 계좌를 원고 주장처럼 피고와 C가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돈을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에 누구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아야 하는지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등 참조)를 들며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은 은행과 사이에 예금계약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므로 피고를 (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계약 당사자로 본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위 판례를 들면서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이 사건 돈에 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라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만일 원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돈에 관한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C라는 주장이라면, 이 사건 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더욱 증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1심과 다소 내용을 달리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돈에 관해 피고와 C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2항 중 예비적 청구 기각 부분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해당 부분 청구 철회(소 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판사 최태영, 판사 심재남